

4.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

대통령령 제16,183호 1999. 3. 12.

개 정 이 유

건설기계의 소재지 변경신고제도를 폐지하고, 축산농가 등 농촌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2톤미만의 소형로우더를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규제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주 요 내 용

- 가. 건설기계는 전국을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소재지를 이동하는 때마다 변경신고를 하게 하는 것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지나친 불편을 초래하고 제도시행의 실효성도 없으므로 소재지 변경신고제도를 폐지함(현행 제7조 삭제).
- 나. 건설기계의 형식승인시 전문기술 관련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기계형식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나, 그 실익이 크지 아니하고 동 위원회 운영시 오히려 민원처리기간이 연장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이 크므로 이를 폐지함(현행 제11조제4항 및 제5항 삭제).
- 다. 건설기계대여업의 종류를 종전에는 건설기계의 보유대수에 따라 종합·단종 및 개별 건설기계대여업으로 구분하였으나, 종합건설기계대여업과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은 그 업종구분의 의미가 크지 아니하므로 이를 통합하여 일반건설기계대여업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(령 제13조제2항).

라. 축산분뇨처리 등을 농촌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2톤 미만의 소형로우더는 안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서 건설기계로 분류됨에 따라 그 소유자에게 면허취득, 등록 및 검사 등 과도한 부담을 주었으므로, 앞으로는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 줌(령 별표 1).

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본문중 “변경(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지·사용본거지 및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를 제외한다)”을 “변경(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를 제외한다)”으로 한다.

제7조를 삭제한다.

제11조제2항중 “승인을 하거나 변경승인을 하고, 형식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”를 “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.”로 하고,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.

1. 일반건설기계대여업 : 5대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(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2. 개별건설기계대여업 : 1인의 개인 또

는 법인이 4대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

제3조제1항 본문중 “서울특별시·직할시·광역시”를 “특별시장·광역시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및 제10조중 “서울특별시·직할시”를 각각 “특별시·광역시”로 한다.

제18조 본문 및 제1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“건설부장관”을 각각 “건설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
별표 1 제3호 로우더의 범위란중 “1톤이상”을 “2톤이상”으로 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건설기계대여업의 업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

주택회보